

진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

진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조례」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. 6. 18.

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회장



1. 모집 개요

가. 접수기간 : 2026. 6. 18.(목) ~ 6. 25.(목) 09:00~17:00 / 8일간

나. 모집분야 및 인원

기관명	과목명	인원	강 의 일 정	교육장소
진잠동 주민자치센터	난타	1명	월/수 15:00~17:00	진잠동 행정복지센터 (지하 다목적실)

※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유성구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

2. 위촉기간 및 강사수당

가. 위촉기간 : 2026. 7. 1. ~ 2026. 12. 31. (6개월)

※ 4회(4년)에 한하여 연임 가능

나. 강사수당 : 기본 2시간 70,000원

3. 심사방법

가.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 선발

- 1차 서류심사 (50%) : 신청서 및 제출자료 등 서류 심사
- 2차 면접심사 (50%) :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강사자질 등
대면 심사

나. 선발 방법

- 1차, 2차 심사 합계 최고 득점자 선발
- 동점자 있을 경우 유성구 거주 우선 및 강의경력 등으로 선발
- 최종 선발자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차 순위 선발
- 1인이 응시했을 경우 합산 점수가 80점 이하이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해당자가 없으면 재공고
- ※ 수강생 모집 결과 15명 이하로 폐강될 경우 최종합격 후에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심사 및 선발일정

가. 서류접수 : 2026. 6. 18.(목) ~ 6. 25.(목) 8일간

나. 서류심사 : 2026. 6. 26.(금)

다. 면접심사 : 2026. 6. 29.(월) 오후 2시, 진잠동 주민자치회 사무실

- ※ 면접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
면접 일정 개별 통보

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6. 29.(월) / 개별통지

5. 지원자격

가. 국가, 공인기관,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
나.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

다. 온라인 강의 병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자

라. 1365에 봉사 실적이 100점 이상 있는 자

※ 관련분야 경력범위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교육원 및 연수원 등에서의 전임강사로서의 강의 경력 및 초·중·고 전공과목 담당교사 경력 및 전공과목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강사로서의 강의경력
- 사단법인, 재단법인 등 각 법인, 사회단체 및 국가, 지방자치 단체 위탁 교육기관에서의 강의경력
- 문화센터(백화점, 금융기관 등)에서의 강의 경력

6. 신청서 접수 및 접수처

가. 구비서류

- 강사 지원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사진부착), 자기소개서, 강의계획서
(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- 경력증명서(원본) 1부 :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행된 것
※ 해당분야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발행기관 직인 필수)
- 강의 경력증명 관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-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(면접 시 원본 지참)
- 기타 수상경력, 사회봉사활동 실적(1365) 등
※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며, 이메일 접수 시 스캔본 첨부

나. 접수방법

- 방문접수 : 진잠동 주민자치회 사무실(한옥동)
※ 공휴일 및 평일 12:00~13:00(점심시간) 제외
- 이메일 접수 (scy0313@naver.com)

7.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

가.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

나.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쳐 제출한 것만 인정

다.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서류접수의 취소는 불가하며, 기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8. 기타사항

가.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의 채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삭제 됨

나.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

다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음

①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
②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하여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

③ 강사로서의 품위손상, 강의불참 또는 무성의,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

⑤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라.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센터 (☎611-51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